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6월 29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6월 30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7월 8일

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나. 제안이유

- 시정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휴가를 부여하여 심신의 재충전 기회 부여 및 사기진작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자녀 입영일 특별휴가 부여

다. 주요내용

- 장기재직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제7항)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10일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 20일
- 자녀 입영일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제8항)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 1일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신 정 순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 시행됨에 따라 삭제되었던 장기 재직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을 재도입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다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 론 요 지 : 생략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